|  |  |  |
| --- | --- | --- |
| **동기자료 주요문건 제공 및 관리 유관사항 명확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4호  ‘방관복(放管服: 번역자 주 - 정부기능 간소화，권력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개혁을 한 단계 더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최적화하며, 세무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여 납세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신고와 동기자료 관리 유관사항을 보완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2호) 동기자료 준비 및 제공 요구의 관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규정에 따라 주요문건 준비가 요구되는 기업그룹은 만약 그룹 내 기업이 각각 2개 이상의 세무기관 관할인 경우, 어느 하나 기업 주관세무기관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주요문건을 제공할 수 있다.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주요문건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주관세무기관에 자발적으로 주요문건을 제공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한 뒤에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 공고에서 칭하는 ‘자발적 제공’은 세무기관에서 특별 납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업이 주요문건을 제공한 상황을 뜻한다. 만약 그룹 내 하나의 기업이 세무기관이 특별히 실시하는 납세조사를 받았고 이미 세무기관에 관련 주요문건을 제공한 경우, 그룹 내 기타 기업은 주요문건을 제공하는 것을 면할 수 없지만 그룹은 여전히 기타 어느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여 전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주요문건을 받은 주관세무기관은 아래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 기업그룹 내 각 기업이 1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기관의 관할인 경우, 주요문건을 받은 주관세무기관은 차례차례로 성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성 세무기관에서 주요문건의 관리를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여 수요에 따라 그룹 내 각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2 기업그룹 내 각 기업이 2개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기관의 관할인 경우, 주요문건을 받은 주관세무기관은 차례차례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주요문건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여 수요에 따라 그룹 내 각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공고는 201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4일 |  | **关于明确同期资料主体文档提供及管理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4号  　　为进一步深化“放管服”改革，优化税收环境，简化办税程序，减轻纳税人负担，现就落实《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关联申报和同期资料管理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关于同期资料准备及提供要求的有关事项公告如下：  　　一、依照规定需要准备主体文档的企业集团，如果集团内企业分属两个以上税务机关管辖，可以选择任一企业主管税务机关主动提供主体文档。集团内其他企业被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主体文档时，在向主管税务机关书面报告集团主动提供主体文档情况后，可免于提供。  　　本公告所称“主动提供”是指在税务机关实施特别纳税调查前企业提供主体文档的情形。如果集团内一家企业被税务机关实施特别纳税调查并已按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主体文档，集团内其他企业不能免于提供主体文档，但集团仍然可以选择其他任一企业适用前款规定。  　　二、收到企业主动提供主体文档的主管税务机关应区分以下情况进行处理：  　　（一）企业集团内各企业均属一个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机关管辖的，收到主体文档的主管税务机关需层报至省税务机关，由省税务机关负责主体文档管理，统一组织协调，按需求提供给集团内各企业主管税务机关使用。  　　（二）企业集团内各企业分属两个或者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机关管辖的，收到主体文档的主管税务机关需层报至国家税务总局，由国家税务总局负责主体文档管理，统一组织协调，按需求提供给集团内各企业主管税务机关使用。  　　三、本公告自2018年5月20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4月4日 |